

① 郵便物の 檢閲, 電信電話의 盜聽, 信書의 開披에 대한 事前 令狀主義

- 民主主義

② 郵便物の 檢閲, 電信電話의 盜聽, 信書의 開披는 國家의

安全과 公共의 秩序를 害할

明白하고 現存하는 危脅이

있다고 認定되는 경우에 檢

事の 申請에 依하여 法官이

發付한 令狀에 依하지 아니

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.

- "通信의 自由"이 당연히 포함되며, 權限을 國家 安全保障을 위하여 臨時郵便法에 의해 信書를 開披할 수 있음

- "盜聽"이라고 하는 文句 또한 憲法典의 用語 로는 不適當함.